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재무과)

의안번호	제274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(2024. 4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상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(안 제5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4. 2. 29. ~ 2024. 3. 20. (20일간), 의견없음

4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현행 조례 제5조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시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소액 체납세액 기준에 준하여 일반우편 발송 세액 기준을 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,
- 상위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제4항¹⁾의 소액 체납세액 기준이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의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1) 제55조(납부지연가산세)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0. 12. 29., 2023. 12. 29.>